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은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3. 5. 24 선고, 2019헌마1234)의 취지를 반영하여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안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다양한 특별교통수단이 개발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의 범위를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서 승차정원 25인 이하 승합자동차로 확대하고,

휠체어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여객시설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별표 1)을 정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증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가슴·엉덩이·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장치 및 이동식 간이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정장치 및 이동식 간이침대의 안전기준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과 같다.

별표 1 제2호카목3) 중 “엘리베이터”를 “승강기, 화장실, 출입구(출입구 번호 포함)”로, “표기”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로 하고, 같은 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버목1) 중 “이하”를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의 범위로 휠체어등의 승하차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 4)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

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축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축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5)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종합안내소, 화장실, 승강기, 출입구 등 주요시설의 설치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별표 1의3 제1호 중 “15”를 “2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자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앉기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교통약 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는 휠 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 기 등의 승강설비, 가슴·엉덩 이·발목 등 3개 이상의 부위를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장치 및 이동식 간이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정장치 및 이동 식 간이침대의 안전기준은 「구 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과 같다.</u>